

##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

(전 · 평시용)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조 목 적

이 규정은 해군 정훈공보규정(7-0-1-규01),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(국홍보 33230-2215호)에 따라 해군의 정책과 활동상을 홍보하고 각종 해군 관련 정보 제공 및 여론 수렴을 위해 해군 각급 부대(서)에서 개설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조 용어의 정의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인터넷 홈페이지”(이하 홈페이지)라 함은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언어로 작성한 문서형태를 말한다.
2. “인터넷 시스템”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련 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구축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보호체계 등을 통칭한다.
3. “메뉴”라 함은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자료의 분류 목록을 말한다.
4. “계정”이라 함은 서버에 접속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각 관리자에게 부여한 고유의 문자열을 말한다.
5. “홈페이지 관리”라 함은 홈페이지의 메뉴 및 내용 구성 등 콘텐츠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말한다.
6. “홈페이지 운영”이라 함은 홈페이지 유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.
7. “콘텐츠”라 함은 인터넷 상에 제공되는 문자, 부호, 음성, 음향, 이미지,

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, 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을 말한다.

8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」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.

### 제 3조 적용범위

이 규정은 해군 전 부대(서)에 적용된다.

## 제 2 장 홈페이지 운영 업무 분장

### 제 4조 업무 분장

#### 1. 정보화기획실장

- 가.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기반시설,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중·장기 발전 계획 수립, 예산 반영 및 집행
- 나. 해군 인터넷 정보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
- 다. 해군 홈페이지 개발·개선 시 사업 관리

#### 2. 정훈공보실장

- 가.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
- 나. 해군 홈페이지 관련 각종 규정 제정 및 시행
- 다. 인터넷 홍보정책 수립 및 홍보기법 개발
- 라. 홈페이지 게시 자료 최신화 확인·감독
- 마. 기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조정

#### 3. 중앙전산소장

- 가. 홈페이지 제작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·개선 시 기술지원 및 유지·보수 지원
- 나. 홈페이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인터넷 시스템 종합 관리 지원
- 다. 인터넷 시스템(및 데이터베이스)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강구
- 라.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원

#### 4. 해본 각부서 및 직할부대, 각급부대

- 가. 홈페이지 소관 메뉴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갱신
- 5. 각급 부대 홈페이지
  - 가. 홈페이지 개설 각급 부대장은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각종 콘텐츠,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개발 등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.

## 제 5조 홈페이지 관련 위원회 운영

- 1.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제4조의 업무분장 임무 수행 시 각 부서 간 협의, 조정이 필요한 업무나 사안에 대해서 해군 홍보위원회를 활용, 의결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.
- 2. 해군본부 홈페이지 실무위원회
  - 가. 위원장 : 홈페이지 관리책임자
  - 나. 위원회 구성 : 홈페이지와 관련된 담당부서의 콘텐츠 관리자
  - 다. 운영 및 개최 : 홈페이지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 토의 필요 시 소집
  - 라. 기 능
    - 1)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사항 토의
    - 2) 홈페이지 메뉴 구성 및 게시 자료의 적절성 판단
    - 3)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발전 사항 토의
- 3. 각 부대 홈페이지 관련 위원회의 운영은 본 규정 제5조 2항을 준용 한다.

## 제 3 장 홈페이지 제작 및 콘텐츠 관리

### 제 6조 홈페이지 제작 및 개선

- 1. 각급 부대(서)장은 필요시 참모총장(정훈공보실장)의 승인을 얻어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. 단, 사전에 정훈공보실장 및 중앙전산소장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.
- 2.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규 개설 및 전체적인 범위의 개선은 이를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해군 자동화 정보체계 업무규정을 따르며, 부분적인 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선은 홍보자료의 제작 절차를 따른다.

### 제 7조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책임

- 1. 해군본부 및 각급 부대 홈페이지는 제4조의 업무분장에 따라 관리

및 운영책임을 진다.

2. 홈페이지 개설 각급 부대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부대 내 자체 인사 명령을 시달하고 그 결과를 참모총장(정훈공보실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8조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

1. 해군 인터넷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
### 가. 참모총장 동정

참모총장 사진, 인사말씀, 지휘방침, 대내·외 주요활동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.

### 나. 해군 및 부대소개

해군의 임무, 해군본부·해군부대 조직 소개, 해군 훈련소개 및 해군 발전 방향·전력건설 방향, 해군관련 역사 및 학술활동 등 해군을 소개하는 공식 자료이다.

### 다. 미담 등 홍보소재

언론매체 대상 홍보소재가 되는 각종 미담을 비롯한 보도자료·보도사진·보도결과, 자체 제작한 홍보용 간행물 등이다.

### 라. UCC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

해군을 소재로 장병 개인이 제작한 UCC 포함한 동영상 자료와 방송으로 보도된 각종 영상자료이다.

### 마. 관련 법령에 의한 공개 콘텐츠 및 서비스

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인터넷 상에 공개해야 하는 자료로서 전자민원창구, 해군모집, 정보공개 제도, 신고·상담센터, 입찰공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. 필요 시 정보를 입력 또는 수집하여 처리하고 이를 전시하는 정보체계와 연계하는 콘텐츠이다.

### 바. 방문자 참여용 게시판

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메뉴로서 ‘자유게시판’, ‘예비역 자유게시판’, ‘전우 찾기’ 등이 이에 해당된다.

2.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각 부대(서)장은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시달하여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, 각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절차는 아래에 의한다.

### 가. 참모총장 동정

해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내 <참모총장> 메뉴 내용 중 사진, 인사말씀, 약력 등은 비서실장이 관리하며 홍보/보도자료는 정훈 공보실장이 관리한다. 각급 부대에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모총장 부대방문 소식 등 참모총장 동정 관련 소식을 게재할 경우에도 사전에 정훈공보실장과 협조 후 게재하여야 한다.

나. 해군 및 부대소개

해군의 임무와 역할, 조직, 훈련, 전력건설 방향 등 발전방향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개신할 경우에는 해군본부 소관 부서 별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또한 예하부대에서 관련내용을 별도 제작하여 탑재하고자 할 때에도 해군본부의 업무 관련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다. 미담 등 홍보소재

미담 등 인터넷을 이용한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에 대한 제작 및 검증은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및 장성급 부대장이 주관하며 관련 절차는 해군정훈공보규정에 의한다.

라. UCC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

1) 인터넷에 탑재할 목적으로 제작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제작자 소속 장성급 부대(서)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군본부 정훈공보 실장의 조정통제를 받아 게재한다.

2) 멀티미디어 콘텐츠 탑재시 소통량 분석 및 관제를 위해 중앙전산소장에게 사전 통보한다.

마. 관련법령에 의한 공개 콘텐츠 및 서비스

각 부대(서)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.

바. 방문자 참여용 게시판

관련 게시물 관리 절차는 아래 9조에 의한다.

3.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한다.

## 제 9조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물 관리

1. 홈페이지 게시판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. 각 게시판 관리 담당 부서는 게시내용 중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대(서)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2.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자의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

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. 필요 시 그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게시자(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)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- 가.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거나 보안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
  - 나.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
  - 다. 특정기관, 단체,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
  - 라.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
  - 마.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,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
  - 바. 욕설,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
  - 사.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
  - 아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
  - 자. 홈페이지 내 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중복 게재한 경우
  - 차.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·시행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
  - 카. 기타 오류, 장난성의 내용 등 기타 본 호의 규정에 비추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민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‘전자민원창구’를 이용토록 안내한다.
4. 게시물에 대해 작성자가 아닌 자 또는 기관이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식문서로 접수한 후,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. 삭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삭제 요청 자료에 대한 반대 의견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.
5.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배너, 팝업창 등 신규 게시물의 게재 또는 기존 게시물의 보완 필요 시 게재·보완 희망일 1주 전 공문으로 정훈공보실장 및 중앙전산소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.
6. 팝업창 등 방문자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게시물은 1주일간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내용에 따라 정훈공보실장과 협조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7. 기타 요청에 의한 게시물 및 팝업창, 배너 등은 홈페이지 관리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임의대로 삭제할 수 있다.

## 제 10조 홈페이지 연계 업무의 처리

1.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되는 각종 업무(전자민원창구, 해군모집, 신고 · 상담, 정보공개 등)는 주관 부대(서)에서 직접 처리 및 조정 · 통제 한다.
  2. 처리 주관 부대(서)에서는 인터넷 업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 : 이 규정은 2003.12.15.(제정 제416호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 : 이 규정은 2006. 5.23.(개정 제1064호)부터 부분개정  
(조직개편에 의한 직책 및 부서명 변경 / 용어의 정의 추가  
(인터넷시스템, 홈페이지 관리 / 운영 등) 시행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 : 이 규정은 2007.3.28.(개정 제1204호)부터 부분개정 (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콘텐츠 분류, 콘텐츠별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절차(참모총장동정 / 해군 및 부대소개 / 미담 등 홍보소재 / UCC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/ 관련법령에 의한 공개 콘텐츠 및 서비스 / 방문자 참여용 게시판)) 시행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 : 이 규정은 2009. 5. 6.(개정 제1502호)부터 일부 개정 (해본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명 변경 등) 시행한다.

부칙

1. 시행일 : 이 규정은 2010. 4.19.(개정 제1630호)부터 일부 개정  
(멀티미디어 콘텐츠 탑재 시 소통량 분석을 위한 조치조항 추가)  
시행한다.

작성관 해본 정훈공보실 공보과 뉴미디어담당 / 910-6624

## 해군참모총장